

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도시형캠퍼스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와 명칭, 유형 및 종류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).

II. 검토의견

안 제2조는 “본교”와 “도시형캠퍼스”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각 개념을 서로 인용하여 규정하는 등 법체계정합성의 문제가 있으므로,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“공립학교”, “도시형캠퍼스”, “본교”, “분교”의 차례로 정의규정 순서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.

안 제3조는 이 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·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적

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, 이미 제2조 정의규정에서 “도시형캠퍼스”는 공립학교의 분교로 정의하고 있고, “본교”는 공립학교 외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.

안 제4조는 도시형캠퍼스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 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의 특별법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의 예시로 「초·중등교육법」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.

안 제8조는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학과로 운영¹⁾되고 있고,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에서 이를 분리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고려할 때 학과별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어 이를 주서에 반영함.

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전 설치·운영 중인 분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캠퍼스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, 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분교를 도시형캠퍼스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, 현재 운영 중인 분교 중 이 법에 따른 도시형캠퍼스 요건에 맞

1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8조(학과 및 학점제 등)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.

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·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.

③ 고등학교(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)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(이하 “고교학점제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. <

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는 분교만을 도시형캠퍼스로 인정하려는 것이므로 “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설립·운영 중인 공립학교의 분교”의 경우에만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캠퍼스로 보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